

원자력 안전 규제 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장 현 섭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사무관



80년대 초반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도 역시 경제·사회 구조가 대기화·국제화·개방화된 8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 스스로가 규제의 완화 내지 개선에 착수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종 전담 기구들을 설치하여 규제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가 국가 전반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이 상실되어 왔으며, IMF 경제 위기도 상당 부분 이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추진 배경 및 경위

정부 규제 이론에서는 통상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분류한다.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간의 자유 경쟁을 제약하는 것으로

서, 우리 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사회적 규제는 건강·안전·환경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안전 규제는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이다.

따라서 일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하여 경제적 규제와 동일선상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절대적 제약요건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 규제 개혁의 시대적 필요성도 감안하여, 이번의 정부 규제 개혁 프로그램을 원자력 안전 규제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 원자력법을 정밀 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실제 원자력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혁이 가능한 인

허가 행정 절차의 간소화, 원전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업체 관리의 책임 집중, 민간 자율 인증 체제의 활용, 동일 규제의 중복 규정 배제 등과 관련하여 폐지 또는 개선이 가능한 대상을 도출하였고, 그간 원자력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원자력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원자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큰 지장이 없다면 98년중 공포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원자력 관련 규제 개혁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원자력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추진 경위

- '98. 5.19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정책 및 제도분과
- 원자력법 중 원자력 안전 규제 관련 개정 계획 보고
- '98. 5.26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 원자력법 중 원자력 안전 규제 관련 개정 계획 보고
- '98. 7.2~13 : 원자력법 개정안 관계 기관 협의
- '98. 7.8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안) 의결
- '98. 7.20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안) 의결
- '98. 7.21~8.10 : 원자력법 개정안 입법 예고
- '98. 8.21 : 신설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방사선 안전 관리 대행업, 방사선 기기 설계 승인 및 검사
- '98. 8.26~10.23 : 법제처 심사
- '98. 10.29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안전 규제 추가 정비(안) 보고
- '98. 10.29 : 차관회의 의결
- '98. 11. 3 : 국무회의 의결
- '98. 11.11 : 국회 제출
- '98. 11.21 : 당정 협의
- '98. 12. 7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
- '98. 12.14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결

기본 목표와 방향

- 1. 기본 목표**
- 가. 범정부차원의 규제 개혁 방침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
- 과도한 규제는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 인식하에 규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의 개혁이 경제 규제의 개혁과 뒤섞여 완화되어서는 안된다.

나. 안전성 저하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규제개혁을 추진

원자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는 안전성 확보가 그 관건이 되므로, 개혁 의지에 부합하되 안전성 확보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절대적 제약 속에 있다.

다.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활동 강화를 유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확보 노력을 하고, 정부는 그 노력을 지원·조장하는 방향으로 규제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또한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 의식 및 안전 문화 창달을 적극 유도한다.

- 2. 기본 방향**
- 가. 인허가 행정 절차의 합리적 간소화
- 핵연료 주기 시설, 폐기 시설 및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등에 대한 인허가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인허가 절차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나. 원전 사업자의 하도급 업체 관리 책임을 원전 사업자에게 집중
- 역무 제공 업체 등 원전 사업자 하도급 업체의 선정 및 관리의 책임을 원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

은 원전 사업자에게 집중한다.

다. 중복되는 규제의 일원화

타법에 의한 동일 사업 규제와 중복되는 규정 및 원자력법 내 조항간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이를 일원화한다.

라. 정착된 민간 자율 인증 제도의 활용

전력산업기술기준에 의한 민간 자율 인증 제도의 정착을 감안하여 원자력법 내 유사 제도를 폐지하고 동 인증 제도를 활용한다.

마. 사문화된 규정의 정비

원자력선 운영 허가와 같이 과거 적용 경험도 없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성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한다.

바. 기타 기록 비치, 보고 의무 및 면허 제도 등의 완화

사업자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기록 비치 또는 보고 사항 중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 꼭 필요치 않은 사항을 선별하여 이를 완화하며, 면허 취소 후 면허증 반납 의무 등 실효성 없는 규정을 완화한다.

안전 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

1. 인허가 행정 절차의 간소화

58년의 원자력법은 일본의 인허가 절차를 본따서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허가를 규정하였다.

- 사업 허가 → 설계 및 공사 방법 승인 → 건설 → 검사 합격 → 안전 관리 규정 승인 → 운영

	폐지	개선	계
인허가 행정 절차의 간소화	59	9	68
원전 사업자 책임 집중	41	1	42
중복 사항의 정비	77	0	77
민간 자율 규제 활용 확대	14	13	27
보고·기록 대상의 완화	0	22	22
원자력 관련 면허 제도 개선	4	6	10
총 계	195	51	246

〈그림〉 원자력 안전 규제 개혁 기본 방향별 분류

〈표〉 원자력 안전 규제 정비 계획

구분	총계	'98 정비			존치 또는 '99 이후 정비
		소계	폐지	개선	
원자력 안전규제	389(100)	246(63.2)	195(50.1)	51(13.1)	143(36.8)

그후 원자로 시설에 관하여는 도입국인 미국의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소화되었다.

- 발전용 : 건설 허가 → 건설 → 검사 합격 → 운영 허가 → 운영
- 연구용 : 건설 운영 허가 → 건설 → 검사 합격 → 운영

그러나 핵연료 주기 시설, 폐기 시설,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나 절충되지 않은 채 당초의 일본식 제도가 전부 또는 일부 유지되고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인허가는 방사성 위험도 측면에서 발전용 원자로보다 훨씬 낮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용 원자로보다도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금번 규제 개혁을 통하여 핵연료 주기 시설 등 원자로 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체 원자력 관계 시설 인허가 절차에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 건설 운영 허가 또는 사업 허가 → 건설 → 검사 합격 → 운영

이에 따라 「설계 및 공사 방법」과 「안전 관리 규정」의 승인 제도는 폐지된다.

이들 서류는 「건설 허가」 또는 「사업 허가」 신청시에 제출하여 심사 받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의 저해가 없도록 하였다.

- 핵연료 주기 시설의 설계 및 공사 방법과 안전 관리 규정 승인 폐지
- RI 허가 사용자의 안전 관리 규정 승인 폐지
- 폐기 시설 건설 운영시 설계 및 공사 방법과 안전 관리 규정 승인 폐지

2. 하도급 업체의 관리 책임을 원전 사업자에게 집중

원전의 설계·제작·시공·운전·유지 보수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규제 기관은 사업자가 이러한 전책임을 다 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본령이며, 이러한 이치는 사업자가 내부 사정·편의를 위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여,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전책임을 지는 원칙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현행법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인 역무 제공업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역무 제공업 등록 제도를 폐지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직접 규제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선정·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원칙으로 회귀하였다.

3. 중복되는 규제의 일원화

현행 원자력법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식 제도와 미국식 제도가 중첩 도입된 결과, 양 제도가 혼재하고 규제 중복되는 일이 산재하고 있

다. 즉 미국의 면허 제도하에서는 운전원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할 것을 원자로 운전의 요건으로 하고 별도의 운전 책임자 제도를 두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면허 제도를 두지 아니하는 대신 발전소별로 별도의 운전 책임자를 두어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전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미국식 제도에 따라 원자로를 반드시 일정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식 제도에 따라 운전 조종 책임자를 발전소별로 따로 선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규제가 중복됨으로써, 운전 관련 책임이 사업자의 업무 조직상 책임자와 원자력법에 의한 명목상의 책임자로 이원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면허 제도/책임자 제도의 이중 장치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당초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규제 개혁에서는 면허 위주의 책임 체계로 일원화하여, 원자로를 면허 소지자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로 조종 책임자 제도를 폐지하여, 운전 관련 모든 책임은 사업자의 업무 조직상 책임자(발전부장 등)가 지도록 하였다.

기타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혁은 핵연료 주기 사업자 및 핵연료 물질 사용자의 경우 핵연료 물질 취급 책임자 제도를 폐지하고, 허가 사용자의 경우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 제도를 폐지하며 판독 업무자의 경우

판독 취급 책임자도 동일한 이유로 폐지하도록 하였다.

4. 정착된 민간 자율 인증 제도의 활용

주요 부품의 생산, 성능 검증, 판독 자격에 관한 허가·승인을 의무화한 현행의 제도는 민간 인증 제도가 취약하여 정부가 인허가 등을 통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두게 된 제도이다.

즉 주요 부품의 제작 자격에 관한 생산업 허가, 원전 기기의 성능 검증 자격에 관한 성능 검증업 허가, 방사선 피폭 기록계의 판독 자격에 관하여는 정부(과기부)가 그 자격을 확인하게 하여 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그간 원전 기술 자립과 함께 원자력 발전 설비 기술 기준(KEPIC)의 개발을 추진, 완료하여 96년부터 정부의 인정을 받아 민간 인증제를 운영중에 있다.

즉 주요 부품의 제작 자격, 성능 검증 자격이 민간 자율로 인증되고 정부가 이를 감독하는 체제로 성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업 허가, 성능 검증업 허가 제도는 폐지하며, 다만, 아직 민간 인증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판독업 관련 규제는 당분간 존치하되, 허가(승인)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였다.

5. 신규 규제 제도 도입

가. 방사선 기기 제작 승인·검사

제도 신설

방사선 기기 안전성 확인 및 재고 관리를 쉽게 하고, 그 확인을 위한 제작 승인 및 검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나. 방사선 업무 대행 기관의 등록 제도 신설

허가·신고 사용 시설 오염 제거 등 방사선 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였다.

6. 기술 기준 체계의 재정립

각종 인허가 기준 중 기술 기준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바, 이를 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16개 법 조항에 근거하여 총141개 조항의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 기준을 시행 규칙으로 옮겨 규정하였다.

기술 기준은 자체가 다분히 객관적이며 타당성있는 과학적 근거위에서 설정되는 것이지 행정 부처간의 정책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 기준은 과학 기술 발전을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형식에 규정되어야 한다.

기술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할 때 사업자를 대변하는 관계 부처와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개편됨에 따라 부령 제정권을 행사하여 기술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7. 기 타

가까운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원자력선을 제작,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 제작·보유 계획도 없다.

세계적으로도 양극의 쇄빙선 운영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을 뿐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적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자력선 운영 허가 조항은 폐지된다.

변환 사업과 가공 사업은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고, 통상 동일 사업자가 동일 공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핵연료 주기 사업자가 허가를 두 번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였다.

사업자의 각종 보고 의무 및 기록 비치 의무는 안전성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 외에는 폐지한다.

아울러 각종 피허가자의 상속 신고는 폐지하고, 상속 여부의 사실은 허가자 변경 신고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안전 규제 개혁 세부 내용

1.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운영

가. 발전용 원자로 설계 자료 제출

의무 폐지

제14조(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관한 자료제출)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설계에 관한 안전 심사는 건설 허가 신청서 제출되는 안전성 분석 보고서로 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고, 건설 중 사용전 검사에서 상세 설계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 허가 후 제출되는 설계 자료는 실효성이 없고 그 용도가 불명하므로 제출 의무를 폐지하였다.

나. 원자로 조종 책임자 제도 폐지

제26조(원자로 조종책임자의 선임)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감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원자로조종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함

제27조(원자로조종책임자등의 의무) 원자로조종책임자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제28조(원자로조종책임자의 해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에 위반한 때는 그 원자로조종책임자를 해임한 후 새로운 원자로조종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함

원자로는 ① 반드시 면허를 가진 자가 운전하도록 하고 별도의 운전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미국식과, ② 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발전소 부지당 1명의 운전 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전의 전체임을 지도하는 일본식 제도로 대별된다.

우리 나라는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수용하여 이중적으로 운영해 온 바, 면허 소지자가 원자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운전 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조직상 실제 책임을 질 자와 법률상 책임을 질 자로 책임이 분산되어 안전성 확보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조종 책임자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원자로는 현행과 같이 반드시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도록 하되, 운전원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실질적인 책임자(발전부장 등)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원자로 안전 운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다. 수입 핵연료 집합체 검사 폐지

제23조의2(검사)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외국에서 가공된 핵연료집합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로 주요 안전 기기나 부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국내 규제가 없는 점과 형평성을 유지하게 하고, '원전 사업자의 책임 집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가 자체적으로 수입 연료에 대해 검사하도록 전환하였다.

규제 기관은 정기 검사 기간 중 핵연료의 건전성을 검사하게 하여 보편적인 검사가 되도록 하였다.

98년 국내 핵연료 생산 설비가 완비됨에 따라 향후 핵연료 수입은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생산 등 가. 생산업 허가 제도의 폐지

제37조(생산업허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중 총리령이 정하는 부품 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제38조(허가기준) 제37조제1항의 허가기준

제39조(검사)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제출서류에 따라 생산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제40조(생산업허가의 취소등) 일정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정지하게 함

제41조(사업개시의 신고)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지·폐지 또는 재개한 경우 신고하여야 함

제42조(준용)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생산업자에 준용

제42조의2(성능검증부품의 사용) 원자로의 가동기간 동안 성능유지가 필요한 부품은 성능검증후

사용하여야 함

생산업 허가 제도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 설비 기술 기준인 ASME Section III의 민간 인증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에 정부가 그 제작자의 자격을 규제하기 위하여 원자력법상 허가 제도를 시행해 온 것이다.

이는 외국 기술 기준에 대한 인증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국내 업체가 원전 설비 제작에 참여하여 기술을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80년대 말부터 국내에서도 민간 인증 제도 확립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 설비 기술 기준(KEPIC)을 개발해 왔으며, 96년 개발을 완료하여 울진 5·6호기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에서는 민간 인증 제도와 중복되는 생산업 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 인증 체제에 의한 품질 확보를 강화함으로써 전력 사업자인 한전에 궁극적인 책임을 집중시키는 한편, 한전의 자체 감독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나. 성능 검증업 허가 제도의 폐지

제42조의3(성능검증업의 허가) 성능검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제42조의4(허가기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증업의 허가기준

제42조의5(검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성능검증업자"라 한다)가 기준에 따라 성능검증업무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검사받아야 함

제42조의6(성능검증업허가의 취소등) 일정한 경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제42조의7(성능검증업자의 휴. 폐지등 신고)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휴지, 폐지 및 재개한 경우 신고하여야 함

제42조의8(기록과 비치) 성능검증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함

제42조의9(준용) 제20조의 규정은 성능검증업에 준용함

생산업 허가 폐지 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80년대 말부터 국내에서도 민간 인증 제도 확립을 위한 원자력 발전 설비 기술 기준(KEPIC)을 개발해 왔으며, 96년 개발을 완료하여 올진 5·6호기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 법 개정에서는 기술의 국내 저변 확대와 전력 사업자인 한전에 궁극적인 책임을 집중시키는 한편, 한전의 자체 감독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3. 핵연료 주기 사업 및 핵물질 사용 등

가. 설계 및 가공 방법의 승인 등 폐지

제44조의2(설계 및 공사방법의

승인등) 핵연료주기사업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하여 승인받아야 함

현행의 다단계 규제 방법을 일괄 규제 방법으로 하여 중간 승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설계 및 공사 방법은 이를 허가 신청시의 제출 서류로 하였고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존치하였다.

나. 핵연료 설계 및 공사 방법의 승인 등 폐지

제44조의3(핵연료 설계 및 가공방법의 승인) 가공사업을 하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가공에 착수하기 전에 핵연료의 설계 및 가공방법에 관하여 승인받아야 함

핵연료 주기 시설 및 발전용 원자로 시설에서의 핵연료의 안전성에 대한 중복 규제를 배제하고, 아울러 외국에서 수입한 핵연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중간 승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핵연료는 운영 허가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검토시에 그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동중 원전의 정기 검사시에도 그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 운전 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제48조(운전계획서의 제출)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시설의 운전

계획서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가 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며, 이는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라 판단된다.

라. 안전 관리 규정 승인 제도 폐지

제49조(안전관리규정) 핵연료주기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 관리 규정은 인허가 심사시의 제출 서류로 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 승인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규제가 약화된 것은 아니며, 단순히 행정 절차 단계를 간소화한 것이다.

마. 핵연료 물질 취급 책임자 선임 의무 폐지

제50조(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의 선임등)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 하여야 함

제51조(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 등의 의무)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52조(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의 해임) 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주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원자로 조종 책임자 제도 폐지 사유와 동일하다.

즉 면허 제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운전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의 조직상 책임자가 지도록 하였다.

4.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 장치

가. 허가 사용자의 안전 관리 규정 승인 제도 폐지

제70조(안전관리규정) 허가사용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용 및 사업개시 전에 승인받아야 함

원자로 조종 책임자나 핵연료 물질 취급 책임자 선임 등의 폐지 사유와 동일하다.

즉 면허 제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운전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의 조직상 책임자가 지도록 하였다.

나.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 선임 제도 폐지

제72조(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등) 허가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의무

제73조(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의무

제74조(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해임의 명령 및 신고

원자로 조종 책임자의 선임 등에

대한 폐지의 사유와 동일하다.

다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우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이어서 타규제 대상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5. 역무제공업

설계 및 공사 방법, 안전 관리 규정의 승인 제도 폐지

제75조의2(역무제공업의 등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구역에 상시 출입하면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여야 함

제75조의3(등록의 취소) 등록을 한 자의 등록 취소

제75조의4(역무제공업자의 의무등) 역무제공업자 및 그 소속 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제75조의5(기록과 비치) 역무제공업자는 안전관리 사항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의 전단계에 걸쳐 전책임을 진다.

따라서 도급 업체의 선정 및 관리 역시 사업자의 책임이며, 정부가 자격을 부여하고 안전 관리를 일일이 규제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해지고 사업자의 책임 의식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사업자의 엄격한 도급 업체 관리를 유도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도급 업체에 대한 정

부의 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6. 폐기 및 운반

설계 및 공사 방법, 안전 관리 규정의 승인 제도 폐지

제77조의2(설계 및 공사방법의 승인등)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착수전 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81조(안전관리규정) 폐기업자는 사업 개시전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핵연료 주기 사업자나 허가 사용자의 그것과 같이 별도의 승인 제도는 폐지하지만, 제출 서류로 포함시킴으로써 일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인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로 하여 현재의 승인 제도보다 엄격한 심사를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

7. 방사선 피폭 선량의 판독 등

가. 판독업 허가(자체 판독 승인)를 등록제로 완화

제90조의4(판독업등의 승인 또는 허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 판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승인을 얻어야 함. 판독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원자력 관계 사업자에 의한 자체 판독의 경우나 판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기존 승인제 또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이를 일원화하였다.

등록 기준, 검사, 등록 취소 등의 요건들은 기존 허가(승인)제도와 동일하므로 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다.

나. 판독 취급 책임자의 선임 의무 폐지

제90조의9(판독취급책임자의 선임) 자체판독자 및 판독업자는 판독취급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함
제90조의10(판독취급책임자등의 의무) 판독취급책임자는 제출서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제90조의11(판독취급책임자의 해임) 과학기술처장관은 자체판독자/판독업자에 대하여 판독취급책임자를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원자로 조종 책임자 등 원자력법상의 여타 책임자의 선임 등에 대한 폐지 사유와 동일하다.

8. 기술 기준

기술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옮김

각종 허가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적합의무가

규정됨

원자력법상 기술 기준은 위치·구조·설비·성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의 기준을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하고자 한 것이다.

기술 기준은 자체가 다분히 객관적이며 타당성있는 과학적 근거 위에서 설정되는 것이지 행정 부처간의 정책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 기준은 과학 기술 발전을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형식에 규정되어야 한다.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 기준을 강화하고자 할 때, 사업자를 대변하는 관계 부처와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규제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결 어

이상에서 설명한 원자력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최근 민간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정책 건의서를 내는 등 부정적 인식도 대두되고 있다.

근래 시민 단체들의 참여 의식이 증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익 성격의 규제인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

한 참여와 정책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의 규제 개혁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규제 제도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즉 이번의 원자력법 개정은 절차·제도가 중복되어 있거나 적용 가능성이 적은 것을 폐지하고,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폐지된 규제의 보완 방안이 이미 존재하거나 보완책을 새로이 강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규제 개혁은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번 실험해 보는 모험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번 규제 개혁은 둘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신중함을 가지고 임해 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가 시민 단체 및 국민의 우려 등 부담 요인을 안고서도 소신을 가지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원자력법령을 개정하는 것인만큼 사업자는 자발적인 안전성 확보 노력을 배가하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이에 부응하였으면 한다.

또한 시민 단체에게도 건전한 비판과 참여 의식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을 지켜봐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새삼 당부 드린다.